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7. 2-----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7. 2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 3차 총무위원회(2004. 7. 13),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 2004. 1. 29 공포)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

### 나. 주요골자

1)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

- 20세이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안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안 제4조)
- 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3 (안 제5조)
- 서명요청방식 ▷ 청구인대표자 증명 및 서명요청권 위임 등 (안 제6조)
- 서명요청기간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항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안 제7조)
- 서명보정기간 ▷ 10일 이내 (안 제11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 7인이상 (안 제12조)
-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안 제14조)

2)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

-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 등 각종 서식 (안 제15조)
- 투표실지구역, 공표방법 등 (안 제16조)

3.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주민투표법 내용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받아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일부 문구 및 수치를 조정하므로 조례가 쉽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표준안대로 명시하였는데 법제8조 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가 명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라고 추가 하는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되며
- 제5조는 투표를 청구 할수 있는 주민의 수자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기준에 의거 인구 25만~30만 미만의 단체에 해당하는 수치인 총수의 13분의 1이상에 해당한 것이며, 이 수치는 청구주민의 최소한의 수치를 의미하므로 조항 말미의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를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관한 것으로 법제12조 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심의대상 심의회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심의대상은 문제가 없으나

제2항이하 심의회 구성등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38개(기획감사실자료)나 되는데 각위원회의 개최회수역시 연간 1~2회에 불과 한 점을 볼 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기존 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한 점임을 감안 주민투표에 회부될 사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위원회중 본 조례안의 내용과 그 기능 및 구성인원이 비슷한 규제개혁위원회(조례 및 비교표참조)가 대행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붙 임: 수정안 대비표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주민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                      -----총수의 <u>13분의 1</u>로 한다</p>	<p>제5조(주민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                      -----총수의 <u>13분의 1이상으로</u> 한다</p>